#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71 발의연월일: 2023. 8. 18.

발 의 자: 김영주·고민정·김교흥

박대수 · 송옥주 · 윤영덕

이동주 • 이원욱 • 전재수

전해철 · 한정애 의원

(11인)

## 제안이유

2023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무연고 사망 처리된 아동도 45명에 이른다는 사실 등도 추가로 밝혀진 바 있음.

한편,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위기를 겪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부족, 열악한 상황 속 임신·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밖 출산' 및 그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파악은 더욱 어려워져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회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등의 토론 및 자문을 참고하여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생계·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공적 지원체계하의 상담을 거친 임산부가 지극히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출산·익명인도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함께 마련하되, 아동의 출생 경위와 유전 가족력 등은 현행「입양특례법」과 달리 성인이 된 아동이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와 생모의 권익 간 균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출산·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위기임산부)의 안 전하고 건강한 출산·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등).
- 나.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정을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 5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라.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생계·의료·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 마.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등).
- 바. 위기임산부가 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1조제1항).
- 사. 위기임산부가 지극히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되,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조치 및 다회의 상담절차와 기간 제한 없는 사후철회제도 를 규정함(안 제19조 등).
- 아. 익명출산·익명인도보다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제11조, 제17조 및 제31조 등).

- 자. 익명출산·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 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34조 등).
- 차. 익명출산·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철회 기회를 확대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35조).
- 카. 익명출산・익명인도된 아동에게 출생경위, 유전 가족력 등 각종 출생정보가 기재된 상담일지와 익명출산・익명인도 신청서의 열람
  · 등사를 허용하되, 생모의 신원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만은 생모의 동의서가 있는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와 생모의 권익 간 균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제39조및 제40조 등).
- 타. 누구든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인 위기임산부의 익명출산 등에 관한 정보를 출입국사범 단속 등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41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출산 및 양육에 관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원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경우 등 지극히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친권의 공백을 없앰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로서제16조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 2. "익명출산"이란 「모자보건법」 제8조, 「의료법」 제22조 등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임산부의 임신·출산 사실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출산을 말한다.

- 3. "출생아"란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사람 또는 태어난 후 익명인도 된 사람을 말한다.
- 4. "익명인도"란 출산 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양육거부·양육곤란 등의 사유로 자녀에 대한 양육을 지원기관에 요청하고 미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5. "지원기관"이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요양 및 출생아의 양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6. "보호시설"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7. "출생기록"이란 출생아 및 그 익명출산과 관련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위기임산부였던 자 및 출생아를 양육하는 생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이 경우 아동의 생부모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와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야한다.
  - 1.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의 구축 · 운영
  - 2.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 3.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

치 • 운영

-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교육·진학·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 5.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 6. 위기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 7. 위기임산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의료기관에 동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지원 및 그 육성·고용
- 8.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의 설치 · 운영
- 9.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10.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 사실의 유출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 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기임산 부 지원센터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

여야 한다.

-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기준 및 범위·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 보호·지 원 제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위기임산부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기임산부, 그 자녀인 아동 및 출생아를 양육하는 생부 등(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기임산부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기임산부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2. 위기임산부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 위기임산부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위기임산부등의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 5. 위기임산부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기임산부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임산부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익명출산 및 익명인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9조(통보의무의 면제 및 정보 제공 요청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8조·제81조에 따른 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읍·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제2장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및 위기임산부 지원센터

- 제10조(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의 설치)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이하 "익명상담전화"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명상담전화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문적 · 체계적 상담
  - 2.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 3. 관련 지원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 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의료 지원 연계
  - 5.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때에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의 상담 연계
  - ② 정부는 익명상담전화를 운영할 때 전화 상담실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와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로 갖추고, 행정전담인력과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익명상담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1조(위기임산부 지원센터의 지정)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친권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위기임산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관하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양기관을 운영하는자"는 "입양기관"으로,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은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지정될 수 없다"로 본다.
-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 3.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 그 밖에 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건 강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
-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및 출생아에 대한 미성년후 견신청,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등에 관한 법률 지원
- 5. 기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 ④ 지원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원 가정 양육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의 제공 또는 그 정보의 안내 를 우선하여야 한다.
-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⑦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상담전화·지원센터 또는 보호시설 등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익명상담전화, 위기임산부 지원센터 또는 보호시설 등을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전화, 상담 소 또는 보호시설·복지시설 등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 ② 그 밖에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의 평가) ① 정부는 3년마다 익명상 담전화 및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위기임산부 지원 등

- 제16조(위기임산부 지원 신청) 임산부는 누구든지 경제적·심리적·신 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 여부에 관하여 갈등을 겪 을 경우 지원센터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센터의 상담 및 지원) ①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에 서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 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할 경우 상담자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보호·지원 정책 등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및 그 신청(제18조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 절차
  -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 정책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 등에 관한 지원 정 책
  -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의료·주거·사회 복지시설 이용·교육 등에 관한 지원 정책
  - 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 지원 정책
  -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 교육·돌봄 등에 관한 지원 정책(「아동복지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정책 및 아동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비용지원 등 지원 정책
  - 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공되는 양육수당 및 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원 정책

- 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의 무상실시에 관한 내용 및 범위
- 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급여 지급 정책
- 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되는 복지 • 교육 등 지원 정책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에게 제공 되는 지원 정책
- 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정책
- 2. 양육 및 친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3. 출산을 포기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그 효과
-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 및 친생부에 대한 인지청구 관련 지원 정책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위기임산부는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지원센터에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자가 익명출산의 절차 또는 효력에 관하여 문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⑤ 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가 필요로 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입소의 안내·요청 등 주거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후 아동의 양육·보호 계획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그 위기임산부의 출산 예정일이 3개월 이하로 남은 때에는 권고하여야 한다.
- ① 지원센터의 장은 소속 종사자로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상담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⑧ 지원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임산부(위기임산부 지원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다른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⑨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주거·생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지원 센터의 장은 위기임산부 또는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정부 또는 위기임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 1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기임산부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위기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 다.
-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의 제공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려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장에게 대신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려는 때에는 위기임산부 본인에게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의 전부를 위기임산부 본인에게 전화, 이메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 제4장 익명출산 지원 등

- 제19조(익명출산 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익명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에 익명출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임산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임산부의 신청으로 본다.
  -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임산부(이하"익

명출산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일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일이 지난 후로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즉시 접수할 수 있다.

- 1. 익명출산의 절차, 요건 및 효과
- 2. 자녀가 부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 3. 생부의 권리
- 4. 익명출산 후 생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 5. 익명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와 내용
- 6. 익명출산의 경우 자녀가 제28조에 따른 출생기록(제28조제2항에 따라 익명출산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기록을 말한다)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거나, 자녀가 제29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익명출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법원행정처가 교부하여야 한다는 사실
- 7. 익명출산 이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절차 및 「민법」・「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절차, 요건 및 효과(가족관계증명서 기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본·주민등록번호(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2. 생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부모의 유전적 질환 기타 건강에 관한 정보
- 4. 자녀의 출생 경위 및 익명출산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 5. 생부 또는 생모가 출생아의 성명 및 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본
- 6.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익명출산 신청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3항 각 호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다시 한 번 안내하는 상담을 실시한 후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신원을 비식별화할 수 있도록 처리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익명출산 신청인이 아동을 위하여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상세히 기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후 익명출산 확인 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익명출산 신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명 및 관리번호 부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⑥ 지원센터의 장은 관계 공공기관에 제5항에 따른 비식별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익명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익명출산 신청인은 제3항 각 호의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21조제6항에 따른 이관이 있기 이전에 한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수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상담사실 확인, 익명출산 확인서 작성 및 발급, 비식별화 조치에 필요한 사항, 익명출산 신청서의 수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익명출산 신청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명출산 신청인(제1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제공을 신청(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 그 수급자격을 조사하는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관한 조사(소득・재산 및 주거에 관한 조사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없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30세 미만인 사람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익명출산 신청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거나 그 수급자격을 조사하는 때에 익명출산 신청인의 지원 신청사실이 직계혈족 등에게 누설·유출되지 않도록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1조(익명출산 지원) ① 익명출산 신청인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산전·산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산전·산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익명출산 신청인이 안전하게 익명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익명출산 신청사실 및 확인사실 통보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은 익명출산 신청인 및 출생아에 대하여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명으로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의 익명출산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서 진료기록부등 및 출생증명서를 가명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임산부의 익명출산 신청사실을 확인한 때에 「의료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 및 출생증명서를 가명으로 수정하고 수정 전의 원본을 폐기하여야 한다.

-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익명출산을 통한 출생이 있는 경우 그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출생아의 생모에 관한 가명(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명을 말한다) 을 포함한 비식별화 정보
- 2. 출생아의 성별, 수(數), 출생 연월일시
-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심사평가원의 장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즉시 지원센터가 위치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 ⑥ 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상담일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표면에 신청서·상담일지가 들어있다는 사실, 모의 가

- 명·관리번호, 지원센터의 명칭·주소, 아동의 성명·출생일·출생 장소를 기재한 뒤 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다. 다만, 아동의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에 이관한다.
- ⑦ 아동권리보장원은 제6항에 따라 이관받은 신청서·상담일지를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익명출산을 철회하였을 경 우에는 동 신청서·상담일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⑧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2항·제3항에 따른 신청사실 및 확인사실 통보, 진료기록부 작성·수정 및 익명출산 신청사실의 확인,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의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익명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등) ①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아의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한 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른 성명 및 본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781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② 시·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생아의 등록기준지 등을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과 아동의 성명·본·등록기준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제21조제5항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1. 출생아의 성명·본(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생부 또는 생모가 성명 및 본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성별
- 2. 출생아의 익명출산 사실
-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4. 제19조제5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모의 가명·관리번호 및 지원센터의 명칭·주소
-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미성년후견인 지정 등) ①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9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이하"시장·군

- 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출생아에 대한 친권의 상실을 청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라 친권 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 「민법」 제932조제2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은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후견 인이 선임될 때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출생아 의 친권을 대행할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4조(출생아에 대한 보호 등) ① 제23조제4항에 따라 출생아의 친권을 대행할 자로 지정된 자는 익명출산 신청인으로부터 출생아를 인도받아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출생아를 인계하거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가취점 때까지 출생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발견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시·도지사
- 2. 시장·군수·구청장
- 3. 그 밖에 제1호 ·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익명출산 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출생아에 대한 입양 절차는 「입양특례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 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다.
- 제25조(친권 상실 청구 이전의 익명출산 신청인의 일시위탁에 관한 특례) ① 익명출산 신청인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읍·면의 장의 친권 상실 청구 요청이 있기 전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출생 아를 일시적으로 위탁(이하 이 조에서 "일시위탁"이라 한다)하여 보호하게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시위탁하여줄 것을 지원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출산 신청인은 자신의 가명 및 관리번호(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명 및 관리번호를 말한다)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익명출산 신청인에게 직접 출생아를 일시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익명출산 신청인의 가명 및 관 리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즉시 관할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익명출산 신청인이 출

생아를 일시위탁하려는 때에는 가명 및 관리번호를 함께 신고하여 야 한다는 사실을 익명출산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일시위탁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출생아를 인수하고 익명출산 신청인의 가명 및 관리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출생아의 안전·건강과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이 조에서 "일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⑤ 익명출산 신청인은 일시보호조치 중인 출생아에 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일시위탁의 종료를 요청하거나, 지원 센터의 장에게 일시위탁의 종료를 요청하여줄 것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익명출산 신 청인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 출생아를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출생아를 인계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익명출산 신청인에게 출생아를 다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시위탁 및 제4항에 따른 일시보호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익명출산의 철회) ① 익명출산 신청인은 익명출산에 대한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출생아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밝힌 때부터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의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또는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 이전까지

익명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익명출산의 철회도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익명출산 의사를 철회한 신청인 및 입양 취소 청구(제30조 단서에 따른 청구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출생아의 생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동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익명출산 신청인이 익명출산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익명출산의 신청서(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및 상담일지를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6항에 따라 이미 익명출산의 신청서 및 상담일지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리보장원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철회는 지원센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익명출산 철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① 익명출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 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15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②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15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익명출산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익명출산 신청인의가명 및 관리번호를 대신하여 기록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익명출산 신청인이 공개청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법원행정처가교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출생아의 출생기록 열람권) ① 출생아가 성년에 달한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상담일지, 상담사실 확인서, 출생 증명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생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익명출산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출생아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익명출산 신청인의 신원을 기록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익명출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지 아니하 고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응할 수 있다.

제29조(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권 등) ① 출생아는 성년에

달한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이 기재된 가 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익명출산 신청 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는 익명출산 신청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익명출 산 신청인의 신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익명출산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법원행정처는 제3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법원행정처가 제3항에 따른 동의서의 부재를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경우 출생아는 그 기각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다시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익명출산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때에도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동의서(이하이 조에서 "사전동의서"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기각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해당 출생아에 대한 익명출산 신청인의 사전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행정처는 출생아에게 사전동의서의 제출 사실을 고지하여

- 야 한다. 이 경우 출생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
- ⑧ 법원행정처가 사전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교부 청구, 청구사실 통보, 교부 동의서 제출, 사전동의서 제출 사실의 고지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출생아에 대한 친부의 인지 등) 출생아의 친부는 「민법」 제8 55조제1항에 따라 인지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에 대한 친양자 입양이 이미 확정된 경우로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생아에 대한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의 신청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장 익명인도 지원 등

제31조(익명인도 신청) ① 출산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아동의 생부, 생모 또는 그 배우자 등은 지원센터에 익명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생모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생모의 신청으

로 본다.

- ② 지원센터는 익명인도를 신청한 사람(이하 "익명인도 신청인"이라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양육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상담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신원을 비식별화할 수 있도록 처리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익명인도 신청인이 익명인도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익명인도 신청인이 아동을 위하여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보호·지원 정책 등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및 그 신청(제18조에 따른 신청을 포함 한다) 절차
  -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워 정책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 등에 관한 지원 정책
  -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의료·주거·사회 복지시설 이용·교육 등에 관한 지원 정책
  - 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 지원 정책
  -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 ·교육·돌봄 등에 관한 지원 정책(「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정책 및 아동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비용지원 등 지원 정책
- 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공되는 양육수당 및 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원 정책
- 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의 무상실시에 관한 내용 및 범위
- 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급여 지급 정책
- 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되는 복지 •교육 등 지원 정책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에게 제공 되는 지원 정책
- 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정책
- 2. 양육 및 친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3. 자녀가 부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 4. 익명인도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 5. 익명인도의 경우 자녀가 제39조에 따른 출생기록(제39조에 따라

익명인도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기록을 말한다)의 열람 · 등사를 청구하거나, 자녀가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익명인도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법원행정처가 교부하여야 한다는 사실

- 6. 익명인도 이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절차 및 「민법」・「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절차, 요건 및 효과(가족관계증명서 기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 및 친생부에 대한 인지청구 관련 지원 정책
- 8.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정책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본·주민등록번호(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2. 출생증명서(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생부 또는 생모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4. 부모의 유전적 질환 기타 건강에 관한 정보
- 5. 자녀의 출생 경위 및 익명인도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 6. 생부 또는 생모가 아동의 성명 및 본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및 본

- 7. 기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지원센터는 익명인도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⑤ 지원센터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익명인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익명인도 신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명 및 관리번호 부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지원센터의 장은 관계 공공기관 및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 등에 제5항에 따른 비식별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담사실 확인, 익명인도 확인서 작성 및 발급, 비식별화 조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익명인도 통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31조제4항에 따라 익명인도 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접수사실을 지원센터가 위치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제31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상담일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표면에 신청서·상담일지가 들어있다는 사실, 모의 가명·관리번호, 지원센터의 명칭·주소, 아동의 성명·출생일·출생

- 장소를 기재한 뒤 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다. 다만, 아동의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에 이관한다.
- ③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신청서·상담일지를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익명인도를 철회하였을 경 우에는 동 신청서·상담일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 통보,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의이관 및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익명인도된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등) 익명인도된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익명출산"은 "익명인도"로, "제19조제3항제5호"는 "제31조제3항제6호"로, "제19조제5항"은 "제31조제5항"으로, "제21조제5항"은 "제32조제1항"으로 본다.
- 제34조(익명인도된 출생아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지정 등) 익명인도된 출생아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5항"은 "제32조제1항"으로 본다.
- 제35조(익명인도된 출생아에 대한 보호 등) 익명인도된 출생아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익명출산"은 "익 명인도"로, "제23조제4항"은 "제34조"로 본다.
- 제36조(친권 상실 청구 이전의 익명인도 신청인의 일시위탁에 관한 특례) 친권 상실 청구 이전의 익명인도 신청인의 일시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익명출산"은 "익명인도"로, "제19조제5항"은 "제31조제5항"으로, "제22조제1항"은 "제33조"로 본다.

- 제37조(익명인도의 철회) 익명인도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익명출산"은 "익명인도"로, "익명출산 의사를 철회한신청인"은 "익명인도 의사를 철회한신청인(신청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19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으로, "제21조제6항"은 "제32조제2항"으로 본다.
- 제38조(익명인도된 출생아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익명인도된 출생아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익명출산"은 "익명인도"로, "제19조제5항"은 "제31조제5항"으로, "제29조"는 "제40조"로 본다.
- 제39조(익명인도된 출생아의 출생기록 열람권) 익명인도된 출생아의 출생기록 열람권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익명출산"은 "익명인도"로, "제29조제1항"은 "제40조"로 본다.
- 제40조(익명인도된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권 등) 익명인 도된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권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익명출산"은 "익명인도"로, "제27조제2항"은 "제 38조"로 본다.

- 제41조(비밀유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익명상담전화·지원센터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사람
  - 2. 의료기관의 장.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사람
  -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사람
  -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외국인임산부의 익명출산 또는 그 보호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출입국사범 단속 등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장 벌칙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
  -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사람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등을 위한 사전조치) 정부는 이 법 공 포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법에 따른 사무 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허목을 고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
-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익명출산·익명인도 신청서 및 상담일지의 보관